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부는 2022.1.27. 시행되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인 50~299인 제조업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제거·대책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·이행할 수 있도록 「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」을 구성·운영하고자 합니다.
* 2021.10.4.~10.22. 자율진단 지원, 2021.10.25.~12.30. 컨설팅 실시
3. 이에, 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현장지원단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내실있는 자율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율진단을 지원하고, 사업장 컨설팅 시 사업주와 함께 컨설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- 붙임 1.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개요 1부.
2.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주무관	김서환	시설사무관	신정욱	산업안전기준	전결 2021.9.30.
협조자	산재예방지원			과장	박종일
	과장	김정수			
시행	산업안전기준과-789			접수	

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

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856 팩스번호 044-202-8092 / ksh1993@korea.kr / 대국민 공개